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07

발의연월일: 2021. 2. 1.

발 의 자:서영교·강민정·이규민

김영배・양정숙・한병도

주철현 • 오영환 • 김영호

이동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실효를 거두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 긴급재 난지원금 지급, 버팀목자금 집행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 공인이 체감하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은 크며, 손실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는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하여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 등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 나. 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도 조치 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재난 지원)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이하 "조치"라 한다)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소상공인(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 1. 조치기간 동안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
- 2. 조치기간 동안의 사업장 임대료, 조세 등의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금액,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재난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을 포함하며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신 설> 제12조의4(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적 재난 지원) ①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 른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이하 "조치"라 한다)로 소상공 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소상공인(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 조치기간 동안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 2. 조치기간 동안의 사업장 입대료, 조세 등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법위, 지원금액, 절차 및 방법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 <신 설> | 제12조의4(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
|---|-------|--|
| <u> </u> | | 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이하 "조치"라 한다)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소상공인(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조치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 액 상당의 금액 2. 조치기간 동안의 사업장 임대료, 조세 등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